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26. 4. 24. ~ 5.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4개 이상의 회전모터를 장착하여 회전축이 4축 이상인 다관절 구조이며, 설치면과 1축의 회전축은 수직이고 2축과 3축의 회전축은 수평인 것) 산업용로봇(「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8479.50.9000호, 제8515.21.1010호, 제8515.21.2010호, 제8515.21.3010호, 제8515.21.9010호, 제8515.31.1010호, 제8515.31.901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가 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별도로 1개 이상의 부가축(기본축 이외 추가로 부착되는 장치)을 추가로 설치한 로봇
2. 완성품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로봇본체), 제어장치, 전원 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로봇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별표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관련)

1. 가반중량 20kg 이하의 로봇이면서, 설치면으로부터 1~3축이 아닌 축의 최고속도의 평균이 500deg/s를 초과하며, 2축과 3축이 모두 양단지지(兩端支持, both-ends support) 형태를 가진 소형고속로봇
2. 도장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로봇의 방폭기능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그 밖에 국내 법령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도장전용로봇
3. 정해진 작업영역 내에서 인간과 직접 협동하면서 작동하는 로봇으로 국제적 안전기준 ISO TS 15066 및 ISO 10218-1의 규정에 따라 제조된 것임을 인증할 수 있는 협동로봇
4. 인간의 상반신과 양팔을 모방한 형태로 2개의 7축 이상 로봇 팔이 하나의 본체(상반신)에 장착된 14~15축 이상 구조의 양팔로봇
5.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 중 팔레타이징과 같은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축이 4개인 산업용로봇

[별표2]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일본	Fanu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7.45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64
	그 밖의 공급자	18.08
중국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5.96
	ABB Engineering Shanghai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9.85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72
	그 밖의 공급자	17.77